

과징금의 산정기준(제28조 관련)

구분 오염물질	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	지역별 부과계수			배출허용총량 초과율별 부과계수								위반횟수별 부과계수				
		I 지 역	II 지 역	III 지 역	2% 미만	2% 이상 4% 미만	4% 이상 8% 미만	8% 이상 10% 미만	10% 이상 20% 미만	20% 이상 30% 미만	30% 이상 40% 미만	40% 이상	1회	2회	3회	4회	5회
질소산화물	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」 별표 4의 해당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의 5배	2	1	1.5	1.20	1.45	1.70	2.00	2.50	3.50	5.00	7.00	1.0	1.2	1.4	1.6	1.8
황산화물		2	1	1.5	1.20	1.45	1.70	2.00	2.50	3.50	5.00	7.00	1.0	1.2	1.4	1.6	1.8
먼지		2	1	1.5	1.20	1.45	1.70	2.00	2.50	3.50	5.00	7.00	1.0	1.2	1.4	1.6	1.8

비고

1. 배출허용총량 초과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.

$$\text{배출허용총량 초과율(\%)} = (\text{연간 배출량} - \text{배출허용총량}) \div \text{배출허용총량} \times 100$$

2. 위반횟수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이 할당된 기간 동안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누적 횟수를 말한다.

3. I 지역, II 지역, III 지역의 구분은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」 별표 4 비고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다.